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 2016-23호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,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6월 10일  
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」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·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·개선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」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(안 제2조 외)
- 나.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을 조례로 규정 (별표 3, 별표 4 신설)
- 다.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(안 제17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6. 6. 10. ~ 6. 15.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(참조:의회사무국 의사팀, 전화 901-4521, FAX 901-4519)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(찬·반여부와 사유)

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